

대구지방법원 2018. 4. 26 선고 2016가단130629 판결 [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3. 22.

판결 선고 2018. 4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00. 5. 26. 혼인신고를 하였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)은 2013. 6. 27.에 2013. 4. 2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이다.

[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호증, 갑2호증의 2의 각 기재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데 등기는 피고 단독 명의로 하였다. 이는 원고의 소유인 1/2지분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인데, 부부 간 명의신탁으로서 유효하다.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.

3. 판단

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, 갑2호증의 1, 갑3, 4호증,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[을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인 2016. 10. 17.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의 소(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8801)를 제기한 바 있는데, 그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].

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남재현

별지